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333호 2014. 9. 3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고시 제2014 - 81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1

【공 고】

- 정선군공고 제2014 - 656호 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2
- 정선군공고 제2014 - 669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
공람·공고 4
- 정선군공고 제2014 - 673호 2014년도(FY2013)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6
-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 - 18호 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
조례(안) 입법예고 24

고 시

정선군고시 제2014 - 81호

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

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2007-81(2007.10.19.)호로 (주)비젠크퍼레이션 (대표이사 모태용)에서 시행자 지정 받아 추진중인 『삼봉지구 아파트건설사업』에 대하여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3조(감독)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(인가취소 등의 공고)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014년 8월 26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삼봉지구 아파트건설사업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명 : (주)비젠크퍼레이션 대표이사 모태용
 - 나. 주소 :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, 716호(방이동, 잠실리시온오피스텔)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: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-210번지 일원
4.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
 - 가. 내용 :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
 - 나. 사유 : 사업시행기간(2007. 8. ~ 2013. 12.)이 경과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 불가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4 - 656호

2014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

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검사대상(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)

판수동저울, 접시 및 판지시저울, 전기식지시저울, 이동식축중기

2. 검사일정

읍·면별	검사일정 및 시간	장 소	비고
정 선 읍	2014. 10. 13(월) (10:00~16:00)	정선종합경기장 체육관	
고 한 읍	2014. 10. 14(화) (10:00~16:00)	고한읍사무소	
사 북 읍	2014. 10. 15(수) (10:00~16:00)	사북읍사무소	
신 동 읍	2014. 10. 16(목) (10:00~12:00)	신동읍사무소	
	2014. 10. 16(목) (14:00~16:00)	함백출장소	
화 암 면 남 면	2014. 10. 17(금) (10:00~12:00)	화암면사무소	
	2014. 10. 17(금) (14:00~16:00)	남면사무소	
여 량 면 북 평 면	2014. 10. 20(월) (10:00~12:00)	여량면사무소	
	2014. 10. 20(월) (14:00~16:00)	북평면사무소	
임 계 면	2014. 11. 21(화) (10:00~16:00)	임계면사무소	

3. (정기검사연기)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 10일 이내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해당 읍·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신청서 읍·면 산업개발부서 비치)

4. (소재장소정기검사)계량기가 토지·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검사 일전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해당 읍·면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
(신청서 읍·면 산업개발부서 비치)

5.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(560-2358), 읍·면 산업개발부서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09월 01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공고 제2014 - 669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8월 29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청취
2. 위 치 :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-24번지 일원
3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조서

가. 군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 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0	15	집산 도로	945	중로 2-2 사북리 72-5입	사북리 산153-24입	일반 도로	-	정선고83호 (09.6.5)	
변경	중로	2	10	15	집산 도로	966	중로 2-2 사북리 72-5입	사북리 산153-24입	일반 도로	-		
기정	중로	3	9	12	국지 도로	118	중로 2-10 사북리 300-13대	소로 2-1 사북리 300-13대	일반 도로	선명2차 아파트	건고138호 (78.6.8))	
변경	중로	3	9	12	국지 도로	109	중로 2-10 사북리 300-13대	소로 2-1 사북리 300-13대	일반 도로	선명2차 아파트		

☒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0	중로2-10	◦일부구간 노선변경 - L=945m→966m (증) 21m)	◦ 정선군의료원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현황여건상 개설불가능지역에 결정되어 있어, 현황도로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노선 변경
중로3-9	중로3-9	◦노선축소 - L=118m→109m (감) 9m)	◦ 중로2-10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시점부 노선축소

4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(안)도 : 게재 생략 (공람장소 비치)
5.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건축과, 사북읍사무소
6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

7.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: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제출, 열람 기간내
8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(033-560-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4 - 673호

2014년도(FY2013)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

지방재정법 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, 동법시행령 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방법)에 의거 「2014년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」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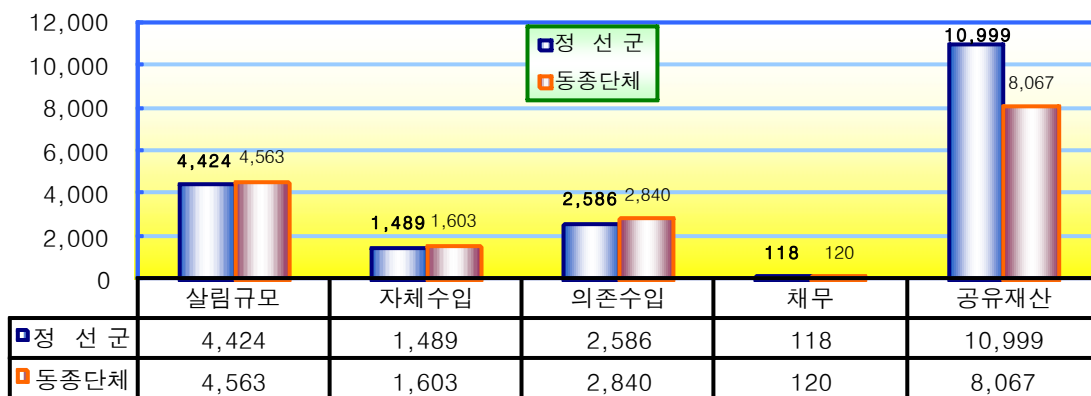
2014년 8월 29일

정 선 군 수

2014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

- ◆ 우리군의 2013년도 살림규모(자체수입 + 의존재원+지방채 및 예치금회수)는 4,424억원으로, 전년대비 35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.
 - 자체수입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1,489억원이며,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1만원입니다.
 - 의존재원(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, 보조금)은 2,586억원입니다.
 -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49억원입니다.
- ◆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118억원이며,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95천원입니다.
 - 공유재산은 '13년도에 토지외 3,670건(2715억원)을 취득하고, 토지외 14건(12억원)을 매각 하여, 현재는 총 10,99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- ◆ 우리군을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유사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(단위:억원)



- ◆ 우리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(4,563억원) 보다 138억원이 적습니다.
 -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(1,603억원)보다 114억원이 적으며,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(2,840억원)보다 254억원 적습니다.

-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(125억원)보다 7억원 적고,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(228천원)보다 67천원 많습니다.
-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(8,067억원)과 비교하여 2,932억원이 많습니다.
- ◆ 우리군의 '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'재정자립도'는 23.78%이며(전국 평균 50.1%),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'재정자주도'는 66.84%(전국 평균 75.1%)입니다.
- ◆ 우리 군의 2013년 최종예산(일반회계+특별회계+기금) 기준 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는 62억원의 흑자입니다.
- ◆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, 우리 군의 재정은 살림규모, 자체수입,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보다 다소 낮은 반면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보다 높고 채무규모는 적어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재정자주도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의 확대와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◎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(www.jeongseon.go.kr)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기획감사실로 연락주시거나,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참여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특 수 공 시

2013 특수공시 작성대상 사업목록

연번	사업명	추진실과	담당부서	실무자	전화번호	비고
1	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	농업축산과	농업마케팅	신승열	560-2448	
2	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	문화관광과	아리랑	김형철	560-2548	
3	수해상습지 개선사업	건설방재과	하천관리	이청하	560-2493	
4	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	건설방재과	재해예방	고승구	560-2496	
5	고한역 주차장 설치	도시건축과	도시개발	서건식	560-2468	
6	폐광지역 아파트(신동) 건립	도시건축과	건축	정성호	560-2473	

1.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조성

사업의 필요성

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사과를 브랜드화 · 명품화를 통한
최신 현대화 유통시설 기반구축으로 부가가치 제고

■ 사 업 개 요

- 위 치 : 정선군 임계면 수고당길 12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3년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3,649m², 건물면적 1,232m²
- 사 업 비 : 1,870백만원(국비 935, 군비 561, 자부담 374)
- 주요시설 : 선별기계장치, 저온저장고, 냉동고, 가공시설(착즙기), 기타장비
- 시설특징
 - 지능형 비파괴 선별시스템 : 중량, 형상, 당도, 색상 자동선별
 - 완벽한 GAP설비 구축, 저온저장고 시설
 -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포장단위 출하

■ 사업진행 사항

- 2011년 04월 :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서 제출
- 2011년 11월 : 변경계획 방침결정(당초 예미농협 ⇒ 임계농협)
- 2012년 07월 : 사업대상지 부지확보
- 2013년 11월 : 임계농협 사과 선과장(유통센터) 준공식

■ 기대효과

-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추세를 감안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정선군
사과 계열화 추진
- 사과 APC를 통한 공동선별과 장기보관 가능품 선별로 농가수취가격 제고

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사 업 비	1,481	-	358	1,123	-

■ 준공완료 전경사진(사과APC 내부)



■ 준공완료 전경사진(사과APC 외부)



2.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사업

사업의 목 적

지역민의 자긍심 극대화 및 문화생활 향유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및 보급 활동의 장 제공

사 업 개 요

-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 일원(정선아리랑 부근)
- 사업기간 : 2009년 ~ 2015년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10,620.52㎡, 건축연면적 6,271.19㎡(지하1층, 지상3층)
- 총사업비 : 28,000백만원(광특 2,000 도 2,000 군 8,000 폐광기금 16,000)
- 사업내용 : 공연장(612석), 전시장 A=850.04㎡(전시시설A=425.63㎡, 지원시설A=425.63㎡)

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진행 사항

- 200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
- 2011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
- 2011년 6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립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완료
- 2012년 9월 강원도 계약심사 완료
- 2013년 7월 공사계약 및 착공(건축, 전기, 소방, 통신, 책임감리)
- 2013년 10월 부력방지공사 지하굴착 작업 중 공동 발견
- 2013년 12월 지반 정밀조사 및 구조검토 용역 시행
- 2014년 4월 지반보강공사 완료 및
- 2014년 5월 자중제어공사 완료

향후 추진계획

- 2015년 7월 공사준공
- 2015년 9월 시설운영(문화 인프라시설 조성, 정선아리랑의 전승 및 보급)

기대효과

- 폭 넓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생활 향유
- 대한민국 아리랑의 시원이며,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전승 및 보급 활동의 장 제공

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사업비	28,000	6,200	0	9,600	12,200

■ 조감도1



■ 조감도2



3. 수해상습지 개선사업

사업의 필요성

지방하천중 미정비 하천에 대하여 하천재해예방 기본계획에 의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

■ 사 업 개 요

- 위 치 :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, 남면 유평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3년 1월 ~ 2013년 12월
- 사업규모 : 호안정비 L=1.80km
- 사 업 비 : 68억원(국비 41억원, 도비 5억원, 군비 22억원)

■ 사업진행 사항

- 2013년 1월 ~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
- 2013년 3월 사업시행계획 수립
- 2013년 3월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
- 2013년 4월 사업착수
- 2013년 12월 30일 사업완료

■ 기대효과

- 수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- 자연친화적 정비로 환경보존 및 친수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

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이후
사 업 비	17,600	6,800	4,000	6,800	0

■ 준공완료 전경사진



■ 준공완료 전경사진



4-1. 고한9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사업의 필요성

비탈면에 형성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비탈면 상부의 국도 및 아파트 등으로 집중호우시 지반약화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

사업개요

- 위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9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3년
- 사업규모 : 보상(건물19동, 토지18필지), 건물철거 19동, 법면정비 2,500㎡
- 사업비 : 40억원(국비 24억원, 도비 3억원, 군비 13억원)
- 주요시설 : 법면정비(녹생토) 2,500㎡ 등

사업진행 사항

- 2010년 4월 ~ 6월 지반안정성 조사용역
- 2010년 5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
- 2012년 2월 ~ 12월 실시설계용역 추진
- 2012년 3월 ~ 12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추진
- 2013년 3월 ~ 12월 공사추진 및 준공

기대효과

- 비탈면 사면안정화를 통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명보호
- 인명보호 : 19가구 / 68명

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사 업 비	4,000	-	2,500	1,500	-

■ 전경사진(정비 전)



■ 전경사진(정비 후)



4-2. 낙동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
사업의 필요성

암반 급경사지의 사면부 소규모 평면 및 켜기파괴의 진행으로 집중호우시 낙석발생 및 절리층의 전도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

■ 사 업 개 요

- 위 치 :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33-1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4년
- 사업규모 : 피암터널 L=92m, 접속도로 L=408m
- 사 업 비 : 43억원(국비 26억원, 도비 3억원, 군비 14억원)
- 주요시설 : 피암터널 L=92m, 접속도로 L=408m 등

■ 사업진행 사항

- 2010년 4월 ~ 6월 지반안정성 조사용역
- 2010년 5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
- 2012년 3월 ~ 9월 실시설계용역 추진
- 2013년 3월 ~ 2014년 6월 공사추진 및 준공

■ 기대효과

- 피암터널 설치로 차량통행 안전확보 및 자연재해 사전예방
- 인명보호 : 102가구 / 226명(낙동리 지역주민)

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이후
사 업 비	4,300	-	100	3,130	1,070

■ 전경사진(정비 전)



■ 전경사진(정비 후)



5. 고한역 앞 주차장 조성

사업의 필요성

주정차 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 초래로, 주차장 개설을 통한 주민정주 여건 개선 및 전통시장 상경기 활성화 도모

■ 사 업 개 요

- 위 치 : 정선군 고한읍 고한역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4년
- 사업규모 : 자주식 주차장 A=4,170m² (소형 161면, 대형 5면)
- 사 업 비 : 50억원(기금 30억원, 군비 20억원)
- 주요시설 : 자주식 주차장(H형강 철골 주차장)

■ 사업진행 사항

- 2011년 5월 ~ 7월 타당성 용역
- 2012년 3월 ~ 2013년 1월 실시설계 용역
- 2013년 7월 ~ 2013년 10월 군관리 계획 결정(변경)용역
- 2013년 3월 건축, 전기, 기계, 통신, 소방, 폐기물 착공
- 2013년 10월 1차 설계변경
- 2012년 12월 기성검사(현공정 50%)
- 2013년 7월 파일기초 보강 조달청 물품 구입의뢰

■ 기대효과

- 주차여건 개선으로 지역상경기 활성화
-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

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사 업 비	5,016	-	2,490	2,026	500

■ 사업전 전경사진



■ 사업진행 현장 사진



6. 폐광지역(신동) 아파트 건립

사업의 목 적

- 신동읍 예미·함백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 수요 발생으로 부족한 주택난 해소
- 폐광지역으로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하여 주민 정주의식 기여

■ 사 업 개 요

- 위 치 :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10년~2014년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6,093㎡, 건축연면적 1,281㎡(지하1층, 지상15층4층)
- 총사업비 : 210억원(도비, 군비, 기타(폐광기금,비축기금))
- 사업내용 : 아파트 2동, 관리사무소, 경로당, 지하주차장, 전기실 등

■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진행 사항

- 2010년 10월 아파트 부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
- 2011년 03월 아파트 부지선정 용역 완료
- 2011년 08월 아파트 설계 공모
- 2011년 09월 아파트 부지 매입 완료 및 실시 설계 계약
- 2012년 08월 강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(조건부 의결)
- 2012년 10월 강원도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승인
- 2012년 12월 공사착공

■ 향후 추진계획

- 2014년 05월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
- 2014년 10월 공사완료
- 2015년 11월중 입주 예정

■ 기대효과

- 폐광지역으로 타 지역과 상대적인 개발소외감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
-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거 수요에 따른 주택난 해소
- 폐광지역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예방

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

구 분	연도별 비교 (단위 : 백만원)				
	합 계	~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사 업 비	21,000	7,451	4,255	4,270	5,024

■ 아파트 조감도



■ 사업진행 현장 사진



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-18호

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4년 8월 26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 개정분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받는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(음용수)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”를 “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”로 함(제명 변경)
-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% 범위에서 지원(안 제6조)
-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(음용수)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(안 제6조)
-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 “군수”를 “부군수”로 함 (안 제9조)
- 관련법 및 용어 띄어쓰기, 수정(안 전체)

3. 의견제출

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 : 수도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주소·전화번호

나. 보내실 곳 : 우233-807 /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
정선군청 (상하수도사업소)

다. 의견제출방법 : 서면·전화·팩스(033-560-2940)·직접방문·
E-mail : khg8166@korea.kr 등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담당 유병길
(전화: 033-560-25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”를 “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와”를 “사람과”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개발·이용하는 자”를 “개발·이용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”을 “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”으로, “신고시”를 “신고를 할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”을 “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1항에서 정한”으로, “예치하여야”를 “예치해야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(음용수를 말한다)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생활용수로 허가·신고 후 농·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
2.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(펜션, 음식점,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)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3.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음용수: 2년.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”를 “전 항목이 「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음용수: 3년. 다만,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

제8조의 제목 “(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위원회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“대한”을 “관한”으로, “지하수관리 위원회”를 “지하수관리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변경에 관한 사항”을 “변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심사에 관한 사항”을 “심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”을 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”을 “오염지하수정화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회 구성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포함한”을 “포함하여”로, “군수”를 “부군수”로, “호선한다”를 “서로 뽑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2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3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정선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5. 군 소속 공무원
6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”을 “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”을 “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

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원이 질병”을 “질병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2호 중 “위원이 품위”를 “품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

제11조의 제목 “(위원회 운영)”을 “(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적 위원”을 “재적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”를 “지하수업무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범위 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“제8호”를 “제8호까지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제4호”를 각각 “제4호까지”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때”를 “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회전으로 인하여”를 “공회전으로”로, “부과된 때”를 “부과된 경우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아니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않은 경우”로, “100분의3에 상당”을 “100분의 3에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상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 부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부터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”를 “별지 제2호서식의”로 한다.

제25조 단서 중 “2이상인”을 “둘 이상인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기한 자”를 “제기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행한 수질 검사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</u>	<u>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지하수개발·이용자”란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(제13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<u>자</u> 와 매매·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 받은 <u>자</u> 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과</u>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.
2. “지하수이용부담금”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<u>개발·이용하는 자</u> 에게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<u>개발·이용하는 사람</u> ----- ----- -----.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	제5조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
①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	①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 제2항----- -- -----

·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 군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·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수질규칙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“지하수수질측정시설”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2. · 3. (생략)

<신설>

----- 신고를 할 때 -----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
제16조제1항에서 정한 -----
-- 예치해야-----.

제6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 ①

-----.

1.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

<신 설>

제7조(수질검사의 주기) ① 지하수개발·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
1. 음용수: 2년, 다만 1일 양수능

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(음용수를 말한다)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생활용수로 허가·신고 후 농·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
2.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(펜션, 음식점,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)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3.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

제7조(수질검사의 주기) ① -----

-----.

1. 음용수: 2년. 다만 1일 양수능

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
년

2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
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
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
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
하이고,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
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·이
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
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
할 수 있다.

1. 음용수: 3년, 다만, 1일 양수
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
5년

2. (생 략)

제8조(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
및 기능) 영 제40조제3항에 따
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
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
하수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
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
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
에 관한 사항

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
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

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
년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전 항목이 「지
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
칙」 제11조-----

-----.

1. 음용수: 3년. 다만, 1일 양수
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
5년

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-----

----- 관한-----
----- 지하수관리
위원회-----
-----.

1. -----
----- 변
경

2. -----
----- 심사

항

3.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4.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 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2. 군 소속 공무원
3.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

3. -----
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

4. ----- 오염
지하수정화계획

5.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----- 포함
하여 -----
----- 부군수-----
----- 서로 뽑는다.

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
2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3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

또는 전문가

4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
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
· 직원

5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
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
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
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
한 자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
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
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
한다. 다만, 위원 중 군 소속공
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
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
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
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
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

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
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
하는 사람

4.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
의원

5. 군 소속 공무원

6.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
인정하는 사람

③ -----
-----제4호 및 제5호에 해당
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
재임기간----- . 다
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
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
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해제) -----

-----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
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-----
-- ----- .

1. 질병-----

경우	-----
2. <u>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</u>	2. <u>품위</u> -----
위를 한 경우	-----
3. <u>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</u>	3. <u>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</u>
<u>경우</u>	
제11조(<u>위원회 운영</u>) ①·② (생	제11조(<u>위원회의 운영</u>) ①·②
략)	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	③ -----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	-----
집하며, <u>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</u>	<u>재적위원</u> - -----
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	-----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-----.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	④ -----
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	-----
두되, 간사는 <u>지하수업무담당으</u>	-- <u>지하수업무담당이</u> -----
<u>로 하고</u> ,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	-----
당주무관으로 한다.	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	⑥ -----
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	-----
하여는 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	-----
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	----- <u>범위에</u>
따라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 수당과	<u>선</u> - -----.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제12조(<u>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</u>	제12조(<u>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</u>
<u>법</u>)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	<u>법</u>) -----
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	-----

사항목·조사방법 및 평가기준
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
의하여 심사한다.

제15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
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
제8호
- 2.·3. (생략)

제17조(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
방법 등) ① 군수는 법 제30조
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
발·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
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
다)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한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
제4호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
제4호
- ② ~ ⑤ (생략)

제19조(부담금 감면) 군수는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
다.

1. (생략)

----- 따라-----.

제15조(세출) -----
-----.

1. -----
- 제8호까지
- 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
방법 등) ① -----

-.

1. -----
- 제4호까지
2. -----
- 제4호까지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부담금 감면) -----
----- 해당하는 경
우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유량계가 시간제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

3. (생략)

제20조(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가산금 등)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다만, 국가와 군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)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“증가산금”이라 한다)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

2. -----
--- 공회전으로-----
----- 부과
된 경우

3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
람은 -----

-----.

제21조(가산금 등) ① -----

-- 않은 경우-----
----- 10
0분의 3에 해당-----
--.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해당-----

-----.

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22조(부과액 조정 신청) ①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3조(과오납금의 처리)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,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.

제24조(과태료처분의 통지 등)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납부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사람이 -----

-----.

제22조(부과액 조정 신청) ① ---

-- 사람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과오납금의 처리) -----

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부터 -----
-----.

제24조(과태료처분의 통지 등) ①

-- 별지 제2호서식의-----

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
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2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위반
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
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
의한다. 다만, 위반행위가 2이
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
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
트를 더하여 부과한다.

제27조(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)
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
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
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
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
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
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
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
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
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
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를 제기
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
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
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8조(과태료의 강제징수) 과태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----

-----.
----- 둘 이상인 ----

-----.

제27조(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)
① ----- 사람
은 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제
기한 사람-----

-----.

제28조(과태료의 강제징수) ----

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
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
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
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
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
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
강제 징수한다.

----- 사람이 -----

-----.